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
번호

393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발 의 자 : 김상진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동길, 김 경, 김기대,
김생환, 김용석, 박기열,
송재혁, 이동현, 이태성,
이현찬, 한기영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'18.12.24)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조항이 종전 법 “제38조제4항제2호”에서 법 “제38조제4항제1호 본문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"조례로 정하는 율"은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: 100분의 20
2.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)의 경감률: 100분의 5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"조례로 정하는 율"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: 100분의 20 2.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)의 경감률: 100분의 50 	<p>제4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"조례로 정하는 율"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: 100분의 20 2.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)의 경감률: 100분의 50